

##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(징구용)

### 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2조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(서비스 이용방법)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거래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<u>소정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</u>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거래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의 <u>기업용 인터넷뱅킹(HanaCBS, HanaCBS Light 등, 이하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)</u>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 입금계좌, 결제계좌, 수수료지급계좌, 이메일주소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의 변경시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~ 제12조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MP 또는 거래기업이 <u>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</u>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~ 제17조 &lt;생략&gt;</p>	<p>제1조 ~ 제2조 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(서비스 이용방법)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거래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<u>에서 정한 인증서</u>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거래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의 <u>기업용 인터넷뱅킹(&lt;삭제&gt;이하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)</u>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 입금계좌, 결제계좌, 수수료지급계좌, 이메일주소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의 변경시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~ 제12조 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MP 또는 거래기업이 <u>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유효한 인증서</u>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~ 제17조 &lt;좌동&gt;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 <p>- 용어변경 반영</p> 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2월 21일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